

제184회 임시회

2001. 3. 13

교육사회위원회

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결과보고

2001. 3. 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1년 2월 27일 제출
- 회부 : 2001년 2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기금의 관리·운용
 - 기금은 도금고에 기금관리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
 -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환경국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.
-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대여
 - 시설개선융자사업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)
 - 융자금의 대여
 -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대출업무를 취급
 - 융자금 대여시 약정체결
- 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
 -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도의회에 제출

○ 시행규칙

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5. 검토의견

○ 상위 법령인

식품위생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, 지방자치법제133조,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거

- 도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,
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의 수정과
-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과
-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